

대법원 2020. 1. 9 선고 2019다278440 판결 [보증채무금]

---

### 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1. 9 선고 2019다27844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9. 5 선고 2019나51428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2. 21 선고 2018가소384094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2. 21 선고 2018가소384094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피상고인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

피고, 상고인B

판결 선고 2020. 1. 9.

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9. 5. 선고 2019나51428 판결

### 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대법관박상옥**

**대법관안철상**

**주심대법관노정희**

**대법관김상환**